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세 무 1 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9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다.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 활성화 및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라.「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타 상위법령 조문 개정(안 제1조)

나.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6조)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신설
-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신설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제적부'의 수수료 감면 신설

다.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정비(별표2, 3)

- 별표2 중 공유재산 대부 신청 및 연장 수수료 삭제
- 별표3 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조정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수정 (안 제1조, 제3조, 제6조제1항,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2항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7)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 제28조
8)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 및 별표 제11, 12호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7조 및 제139조”를 “제154조 및 제156조”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3조 중 “별표 와 같이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제36조”를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 복지법」제32조”를 “「장애인 복지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중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나목의 "(2) 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한다.

별표 중 3. 행정정보의 공개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을 "1GB마다 8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54조 및 제156조-- 관한 ---------------------------------.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 와 같이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 별표와 같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 제12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2.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현　　　행	개　정　안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4.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4.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현 행	개 정 안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삭 제	
<신 설>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제8조(시행규칙) ------------

현 행	개 정 안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필요한 ---------------------.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현 행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1) (생 략)		
(2) 공유재산 대부 신청		
(가) 신규	1건	5,000원
(나) 연장	1건	3,000원
(3) ~ (58) (생 략)		

다.행정정보의 공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개 정 안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1) (생 략)		
(2) 삭 제		
(3) ~ (58) (생 략)		

다.행정정보의 공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금액의 일부개정안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기획재정국 세무1과장 조민숙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9호, 2011. 8. 4.]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5항ㆍ제5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 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 부 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1조 ~ 제11조 (생략)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 제20조 (생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는 500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②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③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2.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8호, 2021. 4. 6., 일부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 류	표준금액
1~10호 생략	-
11. 삭제 <2021. 4.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 삭제 <2021. 4.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이 하 생 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수 수 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